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87
----------	-------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김기현 · 박충권 · 서천호
김기웅 · 김예지 · 김 건
최은석 · 박성민 · 박성훈
최수진 · 우재준 · 김재섭
김장겸 · 서범수 · 김승수
강명구 의원(16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천혜의 기후조건과 항만, 그리고 양질의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그동안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되어 왔음.

그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2016년 해양플랜트 손실과 수주 절벽에 따른 대형조선사 구조조정으로 오랫동안 불황을 경험하며 크게 위축되었고, 2021년 이후 대규모 수주로 조선산업 부활의 기회를 맞았으나,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대규모 적자, 2023년 심각한 인력 부족과 일부 중형조선사의 재무위기 등으로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임.

더구나, 대규모 투자와 설비 재가동으로 2023년 세계 수주량의 59.3%를 차지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산업으로 인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에 있음.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산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양국 조선산업의 부활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및 체계적인 지원 등을 규정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조선산업을 재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조선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하여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의결하기 위하여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활성화 전략회의를 둠(안 제8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급과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함(안 제1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의 구축 또는 스마트야드로의 전환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바. 첨단장비를 장착한 함정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인가·승인·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16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조선산업 관련 필요한 원자재 및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공급망 확보를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사업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을 신속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음(안 제21조).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선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하여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산업”이란 선박, 해양구조물, 이와 관련된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수리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등을 개발·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를 말한다.
3. “조선기술”이란 조선산업과 관련되는 첨단 과학기술 또는 선박·해양구조물을 이용하는 기초과학 및 응용 과학기술을 말한다.
4. “조선기업”이란 조선산업과 관련되는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5. “해양구조물”이란 항해·탐사·해양자원 개발, 공간 활용 등을 위하여 해상 또는 그 아래에 설치된 이동식·고정식 기기 및 구조물과 제1호에 따른 조선산업에 포함되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스마트야드”란 선박의 건조·개조 또는 수리의 생산성 품질 향상과 경영비, 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선박의 건조·개조 또는 수리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선박 건조·개조 또는 수리 시설을 말한다.

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자동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나. 삼차원(3D) 스캐너를 통한 가상 환경 연구시설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다. 그 밖에 선박·건조 개조 또는 수리의 자동화, 무인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7. “조선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란 선박·건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원자재, 소재·부품·장비 등 중 해외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내용 중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지원에 관한 특례와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내용이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발전에 더 유리한 때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계획 등

제5조(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계획 등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시책의 기본 방향
2.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개발·표준화·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조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스마트야드 구축 및 전환 등 첨

단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세제지원 및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연구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동향 등의 조사와 통계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관한 국내·외적인 동향과 기술개발 현황을 조사하고, 미래 전망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

상과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동향, 기술개발 현황, 미래 전망 예측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관한 정보의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과 조선기술에 대한 국내외 시장 정보·기술정보·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조선기업에 제공할 수 있으며,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 기반 조성 및 지원

제8조(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활성화 전략회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의결하기 위하여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부의장은 2명으로 구성하되 1인은 제3항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경쟁력 강화 및 진흥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언론계 및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3. 기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전략회의 위원 중 1명을 간사위원으로 하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⑤ 전략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회의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대한 지원과 투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이라 한다)의 사업화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험 설비, 성능검증 등의 실증화 사업, 스마트야드의 구축 또는 전환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세 감면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조선산업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

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각종 지원 및 조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 개발 사업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조선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개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세제 및 금융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과 관련된 사업자 및 연구 개발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제 및 금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산업단지의 조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급과 조선산업 기반 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민간이 공동으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스마트야드 구축 등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스마트야드의 구축 또는 스마트야드로의 전환(이하 “스마트야드 구축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야드 구축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2. 스마트야드 구축 등과 관련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3. 그 밖에 스마트야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 구축 등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신기술 및 신제품의 인증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조선 신기술 및 신제품 등이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인증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요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개발 지원 및 이를 수행할 양성기관의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4.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산학협력 및 교육 연계에 관한 사항
6.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 및 연구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 퇴직근로자 등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8.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인적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해외 인력교류 파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방산 수출지원과

소재·부품·장비 등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제16조(방산 수출지원 등) ①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을 통하여 첨단장비를 장착한 함정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인가·승인·신고로 한 것으로 본다.

1.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재·부품·장비 및 공급망 안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필요한 원자재 및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공급망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하는 연구 개발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2.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조선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확

인하기 위한 성능검증·인증·실증에 대한 지원

3. 조선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및 재고 확대에 따른 구매 유지 관리, 보관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또는 융자
4.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외기업의 소재·부품·장비 사업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조선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과 관련된 민간 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술지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업이 생산하는 조선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선기업에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내용·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을 신속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